영조대 『璿源系譜紀略』의 수정과 목판 간인

조계영*

■-----《目 次》

- 1. 머리말
 - 1) 『璿源系譜紀略』의 체제와 선행 연구
 - 2) 『璿源譜略修正儀軌』의 현황과 가치
- 2. 『선원계보기략』修正時의 특징
 - 1) 校正廳의 설치와 운영

- 2) 逆獄 관련 子孫錄의 수정
- 3. 板木의 조달과 洗補
 - 1) 自作板의 조달 과정
 - 2) 『선원계보기략』의 洗補
- 4. 맺음말

1. 머리말

1) 『璿源系譜紀略』의 체제와 선행 연구

『璿源系譜紀略』은 1679년(숙종 5)에 朗原君 李윤이 편찬하여 올린 것을 開刊하기 시작하여, 奉安 儀禮을 거행하여 史庫 璿原閣을 비롯한 특정한 봉안처에 영구히 보존함으로써 선왕을 높임과 동시에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상징하게 되었다.¹⁾ 영조대 『선원보략』의 체제는 [①凡例-②璿源 先系-(③列學繼序之圖-④璿源世系-(⑤璿源系譜紀略-(⑥跋文]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²⁾

『선원보략』의 ①은 『선원보략』이 수정될 때마다 조목이 바뀌게 되거나 추가되었는데, 조목의 끝에 당해 년의 간지를 註로 밝혀 놓았다. ②는 始祖 李翰(新羅司空)에서 시작하여 18世 穆祖까지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③은 추준된 穆祖로부터 當宁에 이르기까지 왕위를 계승한 次序를 그린 것이다. ④는 목조에서 당저까지 상세히 적었는데 앞에 ③을 배치함으로써 왕위 계승 관계를 확연하게 보여 준다. ⑤의 譜圖에는 中宗 이하 자손부터 기록하였는데 宣祖의 자손은 姓孫 10代,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1679}년 2월 15일에 宗臣 即原君 李倫이 列聖의 世系와 內外子孫을 모아 『璿原譜略』이라고 이름하고 상소를 갖추어 바치니, 숙종이 간인하여 널리 반포하라고 명하였다.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 2월 15일 경진.

^{2) 『}璿源系譜紀略』은 조선후기 당대에 보통 璿源譜略·璿源紀略으로 불렀으며, 譜略紀略으로도 약칭하였다. 본 논문의 이하에서는 『璿源系譜紀略』을 『선원보략』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外孫 7代까지 수록하였다.³ ⑤는 『선원보략』 중에서도 '子孫錄이라고 지칭한다. <그림 1>은 경종이 즉위하고 수정한 1723년 『선원보략』의 「列堅繼序之圖」이다. <그림 2>는 영조가 즉위한후 수정한 1725년 『선원보략』의 범례에서 '列堅系序圖加劃—行이라고 한 비와 같이 숙종 이래에한 획을 그어 경종과 같은 위치에 영조를 넣은 「열성계서지도」이다. 4 「열성계서지도」에서 當宁를 '主上殿下萬萬歲'라고 한 것이 주목된다.



그림 1 1723년 「列聖繼序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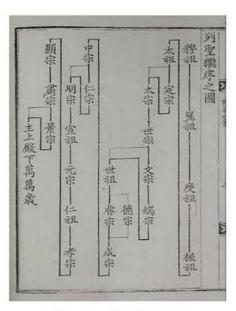


그림 2 1731년 『列聖繼序之圖』

이와 같은 「선원보략」의 체제는 1783년(정조 7)에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 정조의 御製인 「璿源系譜於略序」가 범례의 앞에 놓이게 되었다. 둘째, 『선원보략』이 수정될 때마다 첨록하였던 범례를 정리하여 새로운 범례와 總敍를 만들고, 차후 수정되는 조목은 총서에 첨록하게하였다. 셋째, 「璿源世系」의 뒤에 「列聖八高祖圖」를 붙이도록 하였다. 「열성팔고조도」는 1735년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 作時하기 시작하여 1779년(정조 3)까지, 별도로 每朝의 「팔고조도」를 繕寫、粉縷하여 『선원보략』과 함께 五處 璿源閣에 봉안하였다.5)

³⁾ 이러한 수록 대상의 범위는 1719년(숙종 45년) 범례에 의한 것이며, 이후 1760년(영조 36년)에는 中宗朝 이전의 열성조 자손록을 붙이게 되면서 수록 대상의 범위가 內孫은 4대 外孫은 3대로 축소되었다. 17세기 私家 족보 편찬의 일반적인 원칙인 '詳內略外'의는 다른 『선원보략』 자손록의 수록 원칙에 대해서는 원창 애, 2007 『조선 후기 선원보첩류의 편찬체제와 그 성격』 「藏書閣』 제1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54—62면.

^{4) 『}社紀계旦71年』(〒8649) 凡例"一列聖系字圖加慮—行系譜第二篇初張改修第五篇分作兩篇跋文亦爲入錄支裔依聖教姑不添錄舊譜中訓課處及可以添刪者今因修改一體釐正事並禀旨舉行(以上乙巳所錄)"

『선원보략』에 관한 연구는 홍순민이 『선원보략』의 「總序」를 분석하여, 『선원보략』을 수정하게 되는 사유를 고찰한 것에서 시작되었다.⁶⁾ 홍순민의 연구는 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들의 의례가 거행됨에 따라 『선원보략』을 수정하였고, 수정 사유는 왕권의 위상과 조선후기 정치사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영조대를 『선원보략』의 수정이 정례화되는 시기로 파악하고, 私親에 대한 시호와 존호를 올림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강화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분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그다.

『선원보략』의 판본에 대한 연구는 윤인현이 『璿原系譜系略』의 板本研究』⁷⁷를 시작으로, 1723 년에 『선원보략』을 간인하였던 과정에 대한 연구⁸⁷까지 숙종대와 경종대의 『선원보략』에 대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⁹⁷ 윤인현의 연구는 『선원보략』의 범례·발문·권책수·체제를 비교하여 판본을 선별하고, 숙종과 경종대의 『선원보략수정의제』을 분석하여 간인 과정을 고찰하여 『선원보략』 연구의 기초를 세웠다는 의의가 있다.

우리에게는 목판에 글자를 새긴 無板과 어떠한 책판이 있었는기를 기록한 책판목록 그리고 목판으로 간인한 서책이 남아 있다. 이러한 기록유산을 대상으로 목판 간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왔으며, 이를 통해 목판 간인의 절차와 책판 관리에 대한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100 목판으로 서책을 간인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刻手에 대한 연구는 김상호의 「賴鮮朝 寺刹板 刻手에 대한 硏究」가 있었으며, 최근에 영조대 왕실묘역의 石刻에 참여한 각수 등의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110

⁵⁾ 영조는 1735년부터 '팔고조도」를 만들기 시작하여 수차례에 걸친 수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영조는 私親 八高祖圖를 통해 생모인 渤嬪崔氏를 추숭하여 높이는 한편 외가의 선조들을 追贈하여 왕실족보에서 자신 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열성팔고조도」에 대해서는 김일환, 2007 「朝鮮後期 王室 '八高祖圖」의 성립과정」「藏書閣」제1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73-95면.

⁶⁾ 洪順敏, 1990「조선후기 王室의 구성과 璿原錄: 1681년(숙종 7) 《璿原系譜紀略》의 편찬을 중심으로」 『韓國文化』1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조선후기 《璿原系譜紀略》 改刊의 추이」『奎章閣』13, 서울대학교 도서관.

⁷⁾ 尹仁鉉, 1992 『璿源系譜紀略』의 板本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⁸⁾ 尹仁鉉, 2005 『선원계보기략』경종 3년본 간행과정고』,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7, October,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⁹⁾ 유인현의 연구 성과는 <참고문헌> '2. 『선원보략』의 간인과 판본 연구'를 참조.

¹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참고문헌> '1.목판 간인 연구'를 참조.

¹¹⁾ 김상호, 1990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朝鮮時代 刻手의 石刻 活動考」 『書誌學研究』 第41輯,書誌學會; 2009 「英祖年間의 王室墓域 石刻役事에 참여한 刻手 研究」 『書誌學研究』 第43輯,書誌學會; 『國朝寶鑑』 1782年 板本의 刻手 研究」 『書誌學研究』 第44輯,書誌學會.

2) 『璿源譜略修正儀軌』의 현황과 가치

『선원보략』은 1679년에 開刊한 이후 왕실 의례가 거행됨에 따라 수정되었다. 『선원보략』을 수정하는 役事를 마친 후에는 『선원보략수정의궤』 5건을 작성하여 『선원보략』과 함께 종부시 璿源譜閣과 외사처 사고에 있는 璿原閣에 봉안하였다. 영조대(1725년—1776년) 52년 동안 28회 수정된 『선원보략』의 간인 과정을 기록한 24건의 『璿原譜略修正儀軌』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영조대 『선원보략수정의궤』의 현황이다. 조선후기 『선원보략』에 대한 이해와 목판 간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선원보략수정의궤』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시도되어야 한다.

2007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의궤'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재론의 여지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의궤는 '議禮의 軌範'으로 왕실에서 반복되는 의례에서 후일의 궤범으로 삼기 위해 기록하였다. 『선원보략수정의궤』은 『선원보략』이라는 서책을 수정하는 것인데 왜 의궤를 작성하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홍순민이 언급하였듯이 왕실의 의례, 즉 국왕이 즉위하거나 耆老所에 드는 것, 왕세자의 입학·관례·책봉 등의 의례의 거행 사실을 『선원보략』에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궤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수정을 마친 『선원보략』은 진상과 봉안 의례를 거행하는 왕실서책이기도 하다.

『선원보략수정의궤』에 담긴 상세한 정보와 기록 방식은 연구자에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한다. [3] 『선원보략』의 수정을 주관하는 종부시나 교정청에서는 『선원보략』 수정에 필요한 인력과 물력을 조달하기 위해 관련 관서에 關文·甘結:牒呈 등의 문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게 된다. 이 때 왕래하는 문서의 내용을 통해 『선원보략』의 수정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一所用' 혹은 '一所入' '一次'라는 표현으로 장인들이 사용한 도구와 재료를 알 수 있으며, 이것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각 장인들의 업무 범위나 역할을 새롭게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의궤에는 인력과 물력을 포함한 수많은 정보들을 공정에 따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인력과 물력이 공급되는 시점과 공간에서 실마리를 잡아 유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의궤는 『선원보략』의 「총서』를 비롯한 여타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당시의 情勢와 목판 간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총서」에서는 1735년 『선원보략』의 수정 사항으로 '元子誕降年月日'과 '烈祖徽號'를 바로잡은 것을

^{12) 1740}년 2월과 7월에 수정된 『선원보략』에 대한 의궤(규14031)와 1744년 1월과 9월에 수정된 『선원보략』에 대한 의궤(규14033)가 각기 한 책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1726년과 1731년에 수정된 『선원보략』에 대한 의궤가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의궤의 종수가 24건이 된다.

¹³⁾ 본 논문의 이하에서는 『선원보략수정의궤』를 '의궤'로 약칭하며, 의궤의 해당 년도와 청구기호를 괄호 안에 병기하고자 한다.

기록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의궤를 살펴보면 무신란 이후 '逆制]死之類의 官爵을 바로잡고 지손록을 수정하기 위해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영조대에 『선원보략』을 수정하고 목판으로 간인한 전 과정을 기록한 『선원보략수 정의궤』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영조대 『선원보략』 수정시의 특징을 ① 校正廳의 설치와 운영 ② 逆獄 관련 子孫錄의 수정의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선원보략』을 목판으로 간인할 때의 板木인 自作板의 조달 과정과 『선원보략』의 洗補에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2. 『선원계보기략』 修正時의 특징

왕실족보인 『선원보략』을 목판으로 간인할 때와 일반 서책을 목판으로 간인할 때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는 1679년 『선원보략』을 開刊한 이후 추가되는 수정 사항에 대해 거듭 교정하고 보완하는 '重校補刊'의 간인 방식이다. '중교보간'으로 이루어지는 『선원보략』의 수정에서 아기된 문제와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영조대 52년 동안 28회 수정되었던 『선원보략』의 간인을 이해하는 핵심이며, 이후 조선후기 『선원보략』의 수정을 정례화 하는데 기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校正廳의 설치와 운영

『선원보략』을 수정하여 목판으로 간인하는 것은 종부시에서 주관하였다. 『선원보략』을 수정해야 할 시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종부시 낭청은 제조에게 稟目을 올려 '수정 시항에 대해 啓稟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아뢴다. 제조가 아뢴 대로 하라고 결재하면 종부시에서 국왕에게 草記를 올려 수정 시항에 대해 계품한다. 국왕이 『선원보략』을 수정하라고 윤허하면 종부시는 수정을 거행하게 된다. 『선원보략』을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영조의 생각은 事體 즉 의례의 비중에 있었으며, 의례가 있을 때마다 『선원보략』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우선 『국조어침』을 수정하여올리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그 예를 들면, 1727년에는 孝章世子, 1744년에는 莊鸞世子의表德 入學 冠禮 嘉禮와 빈궁을 책봉하는 동일한 의례가 거행되었다. 그러나 영조는 1727년에는 新住翁主의 載錄과 함께 『선원보략』의 수정을 허락하였으며, 1744년 1월에는 우선 『국조어침』

^{14) 『}선원보략』「총서」,"十一年乙卯春正月 重校補刊 以元子翻降年月日 依王世子例紀載也 烈祖徽號 參互誌 狀玉冊等書 而正之也"

을 수정하여 올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慈殿의 周甲(10월)을 행한 뒤에 수정하라고 명하였다. 『선원보략』을 수정하기로 결정되면 간인을 종부시에서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도감을 설청하여 교정청에서 거행할 것인지를 아뢰고 국왕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보통 『선원보략』의 수정 사항이 많거나 事體의 중요도에 따라 종부시에 교정청을 설청하였다. 종부시는 3품이문이지만 2품이문처럼 直참와 直行移를 할 수 있는 이문이다. 150 그럼에도 1725년 종부시에서 이뢴 것처럼 종부시 당상은 겸직이어서 『선원보략』의 수정을 감독하는 데에 전심할 수 없다. 따라서 종부시에서는 譜法에 정통한 宗臣으로 句管堂上과 校正官을 각기 2員씩 차출하여 『선원보략』 수정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160

종부시에서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 긴밀한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하는 호조와 공조는 2품이문으로, 인력과 물력을 조달하는 관서가 거의 호조와 공조의 屬하기 때문에 속사에게 보내는 공문서도 호조와 공조에서 함께 수취하게 된다. 1725년에 종부시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1700년·1719년·1723년의 전례와 같이 '校正廳'이란 호칭으로 거행할 수 있도록 아뢰었다. 교정청을 설치하지 않으면 『선원보략』을 수정하는 역에서 구관당상과 교정종신이 소속처가 없어 '쓸데없는 관리'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수정의 역을 거행하는 종부시로서는 협조를 요하는 관서와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 부록 1>에서 보듯이 영조대 의궤 26건에서 종부시에서 수정의 역을 주관한 것은 12회이고, 교정청을 종부시에 설청한 것은 14회이다. 영조는 도감을 설치하게 되면 수정의 역이 커지게 되니 항상 경비로 인한 폐해를 염려하였고 되도록 종부시에서 주관하도록 권하였다. 종부시에서도 이것을 염두에 두어 교정청의 설청을 청할 때면 항상 쓸데없는 경비를 줄이고, 그로 인한 폐가조금도 없도록 하겠다고 이뢰었다. 왕실족보인 『선원보략』을 주로 종신들이 주도하여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관서 즉 관료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기록이 의궤에 보인다. 1735년 11월 26일에 영조는 교정청의 여러 당상들과 請對하였는데, 구관당상 密場君 李 梡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私家로 말하자면 족보를 開刊할 때 子孫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근래에 該曹가

^{15) 『}經國大典』「用文字式」"二品部" 1直啓(中外諸將 承政院 掌隸院 司隸院 宗簿寺 亦得直啓 各司有緊事則 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外則無啓目)直行移(相考事外皆啓) 其餘衙門 並報屬曹"

¹⁶⁾ 의剂(1725년, 〒14017) 乙巳四月初三日"今番工役之浩繁 比前無異 而本寺堂上 俱以他公 故誠難專意於看檢 依前例 以精通譜法宗臣 句管堂上校正官 各出二員 使之專意修正"

¹⁷⁾ 의剂(1725년, 元14017) 乙巳四月初三日 "譜略修正之役 非惟事體之至重 若無聽號 則向管堂上與校正宗臣無有屬處有同元官 一依庚辰己亥癸卯之例 以校正廳名號 舉行董役 而至於元費之物 十分節省 以除經費一分之弊 未知 何如"; 의剂(1744년, 元14033) 九月二十二日 "啓日 今此者社大慶後 國朝御牒及孫原譜略 設廳修正事命下矣 依前校正廳稱號 而校歸編次之祭 亦有句管堂上二員 校正官四員 宗班中差出之規 依例差下 與本寺提調郎廳 眼同董役 何如 傳曰允"

지체하는 것이 막심합니다. 지금 종부시에 비어 있는 家舍가 있는데, 거의 쇠락하여 창호가 찢어지고 방의 온돌이 내려앉았으나 때맞추어 수리한다면 役을 시작할 수 있는데도 호조는 진배하지 않고 문서만 왔다 갔다 하니 체모만 손상시킬 뿐이기에 아룁니다."¹⁸⁾

宗臣인 밀양군 이완은 『선원보략』을 사가의 족보에 비유하여 호조의 민첩하지 않은 대응을 꼬집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사가에서는 족보 간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즉 사가에서 자신들의 족보를 간인할 때는 마음을 다해 애를 쓰면서,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에는 때맞추어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기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조는 '선원록 교정청'이라는 사체가 중대한데, 이미 「교정청절목」을 내렸으니 각별히 신칙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영조대에는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 『국조어첩』을 함께 수정하였는데, 먼저 『국조어첩』의 草本을 써내면 다음으로 書寫官을 啓下하였다. [9] 『국조어첩』의 서시를 마치면 『선원보략』의 수정을 거행하게 된다. 『선원보략』은 初草→中草→正書를 마치면 睿覽을 거친 후에 정서본을 膠末로 판목에 뒤집어 붙여 각수가 글자를 새기게 된다. 판각을 마친 『선원보략』은 용도에 따라 進上件・進獻件・頒賜件・奉安件을 印出한다. 20)

1725년 『선원보략』의 수정은 영조가 즉위한 후 처음으로 거행된 역시였다. 영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선원보략』은 『국조어첩』에 비해 改張數가 많지 않더라도, 『시서삼경』과는 달라 한번 수정할 때에 300여건을 印出하기 때문에 비록 한 장을 고치더라도 비용과 공역이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영조는 內間에 소장한 『선원보략』의 新件이 너무 많아 낭비일 뿐 아니라 수장할 때도 공경을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영조대 이후에는 '고쳐야만 하는 장(當改之張)'을 고쳐 들이는 것으로 거행하였다.²¹⁾

영조는 『선원보략』은 상세하고, 『국조어칩』은 간략하여 두 책의 성격이 같지 않다고 말하고, 만약 『선원보략』이 없었다면 그만이지만 기왕에 『선원보략』이 있은 후에야 간인을 소홀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선원보략』 간인에 들어가는 경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염려가 있었다. 따라서 진상건을 다만 고쳐야 하는 장만을 改張하고, 當宁 자손록 장도 修改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²²⁾ 영조의 이러한 생각은 숙종대부터 간인되어온 『선원보략』을 지속

¹⁸⁾ 의剂(1735년, 元14023) 同月(11월) 二十六日 句管堂上 密場君梡曰 "以私家言之 族譜開刊 子孫莫不盡心 近來該曹稽緩莫甚 即今本寺有空閑家舍 盡爲破落 窓戶破傷 房埃皆陷 及時修補 則可以始役 而戶曹無進拜 之事 文移往復 徒傷體貌 故敢達矣'上曰 璿源錄校正縣 事體重大 今則節目已下 各別申飭可也"

^{19) 『}국조어첩』은 別脹으로 下端에 添入하면 되므로 들어가는 物力이 많지 않았으며 봉안할 5건만을 書寫 하였다.

²⁰⁾ 진상건은 국왕에게, 진헌건은 왕세자에게 올리는 것이며, 옹주를 비롯한 宗班과 조정 신하 그리고 유관한 관서에 반사하는 반사건이 있다. 봉안건은 종부시의 璿源譜閣과 정족산·대백산·오대산·적상산의 外史庫에 있는 璿源閣에 봉안하는 것이다.

²¹⁾ 의剂(1725년, 计14017) "此與四書三經有異一番改修時 印出三百餘件 而即今內間所藏新件甚多 非但浮費藏置亦難致敬 此後則只改當改之張 而入之可矣"

해나기려는 의지와,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에 들어가는 경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교정청에서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의 「應了節目」은 당해 연도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거나 추가되는 조목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 조목은 다음과 같다.

「璿源譜略修正時應行節目」²³⁾(1725년 4월일)

- 서시를 위해 더 차출한 충의위 1인은 전례에 의해 군직을 주어 관대하고 늘 출근하되 본시의 충의위 1인과 일체 함께 거행할 것.²⁴⁾
 - 一 본청 당상과 낭청이 쓸 印信 각 1과는 해조에서 수송하도록 할 것.
- 당상·낭청·교정관은 제관에 차정하지 말고, 모든 공회에 참석하지 말며, 복제의 식가를 없애고, 모두 공무를 행하도록 할 것.
- 서리·고자·사령 등은 종부시 원역으로 겸하여 살피게 하고, 수직군사 1명과 다모 1명은 해 조에서 역을 마칠 때까지 정송하도록 할 것.
- 一 본청 당상은 2일 걸러 근무하고, 도청·낭청·교정관은 매일 근무한다. 매월 그믐에 '進不進單子'를 입계할 것.
- 들어갈 판자는 예에 의해 해서에서 진배하도록 하고, 공사 백휴지는 다달이 2근씩, 황필은 5 병, 진묵은 5정을 또한 각 해사에서 진배하도록 할 것.
- ─ 책자에 들어갈 종이와 필묵과 모든 응당 들어갈 물품과 포진 등의 물품들은 계묘년(1723년)예에 의해 모두 각 해사에서 진배하도록 할 것.
 - 미진한 조건은 뒤에 마련할 것.

1747년 2월 20일 「교정청절목」에는 '各司 進排官 가운데 태만한 자는 官員일 경우는 粉牌로 나오게 하고, 下人은 바로 가두어 죄를 다스릴 것'이라는 조목이 추가되었다.²⁵⁾ 이 조목에 따라 2월 23일에 典獄署 刑房書吏와 鎖匠이 笞杖枷를 가지고 수정의 역을 마칠 때까지 교정청에 대령하라는 감결을 내리고 있다.²⁶⁾

²²⁾ 의利(귀14022, 1727년) 丁未十月十二日 "上日 御牒依所產修改 而譜格與御牒譜格不同 若無譜格則已 旣有 之後不可忽也 而經費亦不可不顧 進上件只改其張 而當宁子孫錄張 亦爲修改可也"

²³⁾ 의剂(升14017, 1725년) "一書寫加出忠義衛一人 依前例付軍職元帶 常任為白乎矣 與本寺忠義衛一人 一體 眼同學行為白齊 一 本廳堂上郎廳 行用印信各一顆 令該曹輸送為白齊 一 堂上郎廳校正官 差祭安徐 凡公會勿參 除服制式限 並令行公為白齊 一 書吏庫子使令等段 以宗簿寺員役 使之棄察 守直軍士壹名 茶母壹名乙良 令該曹限畢定送為白齊 一 本廳堂上 間二日任進 都顧即屬校正官 逐日任進 每月晦日進不進單子入 啓為白齊 一 所入板子 依例令該司進排 公事白休紙乙良 每朔貳斤式 黄筆伍柄 眞墨伍丁 亦令各該司進排爲白齊 一 册子所入 紙地筆墨 與凡干應入之物 及輔東等物 依癸卯年例 並令各該司進排爲白齊 一 未盡條件乙良 追乎磨鍊爲白齊"

^{24) 1744}년 9월에는 충의위 2인이 가출되었는데, 서사해야 할 수량에 따라 인원이 가감되었다.

²⁵⁾ 의궤(1747년, 광2-3846) 同日(2월20일) 校正廳節目"一 各司進排官 或有怠慢之弊是白去等 官員用粉牌進來 下人乙良 直囚治罪爲白齊"

²⁶⁾ 의궤(1747년, 장2-3846) 同日(2월23일) 甘結 "典獄署刑房書吏 實鎖匠 持答杖枷 今日爲始 限畢役待令事"

2) 逆獄 관련 子孫錄의 수정

영조는 1721년 9월 26일에 王世弟로 책봉된 이후 辛丑換局(1721년)과 壬寅獻事(1722년)를 겪고 1724년 8월 30일에 즉위하였다. 영조 재위 52년간은 乙巳換局(1725년)에서 乙亥獻事(1755년)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정치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遊獻과 관련된 이들의 削奪官爵과 復職이 번복되었다. 27) 이에 따라 영조 연간에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에 遊獻에 관련된 子孫錄 중 관작 懸註處의 수정이 매번 제기되었다.

1725년 『선원보략』의 수정은 영조 즉위 후 처음으로 간인한 것으로 경종의 諡號廟號陵號 와 영조의 嗣位에 관한 것이다. 1725년 3월 2일 영조는 辛壬獻事를 誣默으로 규정하고 老論 四大臣을 伸寃하였다.²³⁾ 이는 1723년 『선원보략』의 범례 24항목을 수정한 1725년의 범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³⁾ 1725년 의궤에는 역옥 관련 지손록의 수정으로 인해 『선원보략』 반사건을 둘러싼 문제가 기록되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준다.

1725년 5월 16일에 侍讀官 李寶順이 영조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이기진은 1719년에 간인한 『선원보략』을 반사 받았는데, 1723년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 반사 받은 『선원보략』을 환납하였다. 그런데 『선원보략』의 수정을 마친 뒤에도 환급받지 못하다가 1725년에 조정에 들어와 종친부 서리에게 물어보니, '신임옥사의 지손들이 『선원보략에 실려 있어 1719년 『선원보략』을 모두 세초하여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③)이기진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혼자만이 아니라 1719년 『선원보략』을 반사 받았던 여러 신하들이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기진은 역옥으로 죽은 지는 이미 신원시켜 다시 거론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罪死者라 하더라도 『선원보략』을 수정한 후에는 반사자에게 찾아주어야 하는데 先朝에 반사받은 『선원보략』을 공연히 빼앗아 거쳐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이같은 일이 있는가 아뢰었다. 그는 1719년 『선원보략』의 「頒賜記」가 승정원에 있을 것이니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는 '恩賜'에 관계된 일이니 조정 신하들에게 물어 처리할 것을 청하였다. 31)

²⁷⁾ 영조 연간은 乙巳換局(1725년)에서부터 丁未處分(1727년)·戊申亂(1728년)·己酉處分(1729년)·庚申處分 (1740년)·辛酉大訓(1741년)·乙亥獄事(1755년)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²⁸⁾ 신임옥사는 1721년 12월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상소한 조성복과 노론 4대신을 위리안치시킨 신축환국과 1722년 3월 노론 자제들이 환관과 궁녀들을 결탁하여 三急手로 왕을 죽이려 했다고 목호룡이 고변하여 노론 4대신을 처형한 임인옥사를 가리킨다.

^{29) &}quot;一王世弟子女一體紀載 跋文亦爲入錄 支裔依望數姑不添錄 復職[及犯逆犬法罪死]之類 從實刪改事 並禀旨 擧行(以上癸卯所錄 ○末條中 職字下六字 乙巳釐正 時 禀旨刪去)

³⁰⁾ 선행연구에서 1719년(숙종 45) 『선원보략』이 현전하지 않은 것은 1720년에 改張修正하였기 때문이라는 논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尹仁鉉, 2000 『璿源系譜記略』肅宗46年本 刊(5過程考) 『書誌學研究』第20 輯, 書誌學會.

³¹⁾ 의剂(1725년, ন14017) 五月十六日 侍讀官 李箕鎭 啓 頂年自本州 以有上司關文督令還納 臣不得不封**接** 上送 其時閒有釐改之事 旣改之後 似當還給而無消息 不勝訝惑而無緣探罪矣 入朝之後 始招宗親府書吏 問 之則 謂以向來誣獄被殺人姓名 見載之故 舊本則盡爲洗草 皆無可推之跡云 其後聞之 則非特臣也 受賜諸臣

이기진의 啓가 있은 후 5월 20일에 咸平君 李ঝ이 상소하여 이 일의 전말을 아뢰었다. 그 내용은 1723년의 『선원보략』은 자손록 중 신임옥사로 인한 官爵懸註處를 수정하였는데 1723년에 새로 간인한 『선원보략』과 1719년의 『선원보략』이 크게 달라 신건과 구건이 병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1719년에 반사한 200건에 의해 인출하여 올렸으며, 1719년 『선원보략』은 거두어들여 洗草한 후에 휴지는 호조에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③ 이에 대해 영조는 1719년에 반사한 『선원보략』을 洗草하였으니 1719년의 반사자에게 1725년에 수정한 『선원보략』으로 인출하여 주라고 명하였다. 또한 1723년 『선원보략』 반사자는 세보하여 환급하라고 명하였다. 33)

1725년 의궤에는「己玄輝縣冼草還給記」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奉教 李箕鎭'의 이름이 확인된다. 이어「癸卯譜略無離還給記」와 「乙巳譜略頒賜記」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교정청에서는 역옥 관련 지손록을 수정하기 위해 의금부에 관문을 발급하여 '罪死杖斃'를 비롯한 죄인들의 명단을 回移할 것을 요청하였다. 의금부에서는 '① 癸卯以前定配 以後蒙放 ② 癸卯以後定配 蒙放③ 今方在謫④定配身死後 蒙放⑤ 正刑⑥ 物故杖斃⑦ 金一鏡緣坐定配으로 구분하여 관문을 보냈다. 34)

1727년 7월 '丁末換局'으로 李光左는 영의정으로 特敍되었으며, 이광좌의 청으로 1727년 10월에 김창집·이이명·이건명의 官爵을 追奪하고 贈諡를 收還하였다. 이광좌는 '大處分'의 뒤에도 추탈인의 직명이 『선원보략』에 그대로 남아 있어 事體에 손상되니,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에 '及第'라고 써서 洗補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선원보략』과 조정의 翻覆과는 관계가 없으며, 조정에서 進退之際에 그때마다 번번히 洗補改展한다면 어찌 개연하지 않으며, 또한 先朝에도 엄한 處分이 있었지만 被罪人의 관작을 그대로 둔 것이 많았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1727년 11월 15일에 尹淳이 우의정 趙泰德과 영의정 이광좌가 1725년 『선원보략』 수 정시에 罪名 중에 있어 '及第'라고 썼으며, 이번 '大處分'으로 贈職을 수환한 자가 있으니 모두 실제대로 全板을 바꾼다면 물력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세보하기를 청하였다.³⁰⁾ 윤순은 전례에 반 시건을 수취하여 세보한 일이 있으며 이는 하루 이틀의 공력에 불과하니 改張하지 말고 세보한

無不見失 今登筵之人 亦必有如此者矣 其所謂死於逆獄者 今旣伸雪無餘更無可言 而設令果是罪死者 改正 之後 所當推給其人 而先朝恩賜之物 公然還奪 仍不知去處 豈有如此可駭之事乎 其時預賜記 想必見存於政院 考出則可知矣 事係恩賜 何有不敢仰請 自上下詢筵中而處之 何如"

³²⁾ 의剂(1725년, 〒14017) 五月二十日 咸平君泓 上疏 "癸卯喀尔之修改 與己亥子孫錄派補 有異 特以子孫錄中官虧懸 有不得不變通者 故其時本寺啓請釐改 旣巳釐改之後 新件添刪 與舊件大異矣 其時諸議 皆以爲新舊兩件 不可並行 舊件則收聚洗草爲宜云 故本聽諸堂 亦爲相議 頒賜貳百件 依舊件數印進 舊件則以洗草之意 啓禀蒙允 洗草後休紙 還下戶曹 此事願末如而已"

³³⁾ 의궤(1725년, 규14017) 五月二十日 定奪

³⁴⁾ 의剂(1725년, 〒14017) 乙巳四月日 義禁府相考事 "節節肘關內節該 罪死杖斃 及罪商坐謫蒙放 時在坐謫中 人員 回移事關是置有亦 壬寅以上 前已列錄書送 故自癸卯以後 後錄書送爲去乎 相考施行向事 癸卯以前定 配 以後蒙放 癸卯以後定配 蒙放 今方在謫 定配身死後 蒙放 正刑 物故杖斃 金一鏡緣坐定配"

^{35) 『}영조실록』 권14. 영조 3년 11월 25일

³⁶⁾ 의궤(1727년, 규14022) 十一月十五日

다면 간편할 것이라고 아뢰었다. 이에 대해 영조는 『선원보략』 수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고, 자손록 또한 실제대로 다고칠 필요가 없으나 영의정과 우의정의 작질은 세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1727년 의궤의 말미에 「譜略修改處」에 이들의 세보에 대해 수록되어 있다. 자손록 중 水字張에 있는 조태억의 小註에 '及第'로 써 있는 것을 '右議政'으로 세보하였다. 조태억이 『선원보략』의 자손록에 있는 까닭은 조태억의 장인이 沈龜瑞인데, 심귀서의 장인이 洪萬容이며, 홍만용의 아버지인 洪柱元은 貞明公主의 남편이며, 곧 선조의 사위이기 때문이다. 號字張에 있는 이광좌의 소주에 '及第'로 써 있는 것을 '領議政'으로 세보하였다. 이광좌가 『선원보략』 자손록에 기재된 이유는 이광좌의 장인인 洪萬恢는 정명공주와 혼인한 洪柱元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1727년의 의궤에는 11월 15일에 교정청에서 의금부·이조·병조에 관문을 보내 선원보략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등출하여 보내도록 협조를 구했다. 의금부에는 1726년 이후의 罪死·罪謫·大處分仍置之類를, 이조에는 贈職·贈諡:削職·復官爵 人員을, 병조에는 武臣 중 罪死·罪謫·坐謫·復官爵·削黜 인원을 일일이 등출하여 교정청으로 보내 때맞추어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戊申亂(1728년 3월) 이후 1731년(辛亥) 9월에 『선원보략』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의궤는 현전하지 않지만 범례(30·31·32條)를 통해 수정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1731년 이후 『선원보략』의 수정은 무신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던 宋寅明이 1734년 7월 11일에 건의하여 이루어졌다. 당시 종부시 제조를 맡고 있었던 그는 『선원보략』이 선원록에 빠진 것이 있고, 戊申年 이후 바르게 고칠 것이 많으니 『선원보략』을 수정하기를 아뢰었다. 송인명은 1731년(辛亥) 과 1732년(壬子)에 잇달아 흉년이 들어 『선원보략』을 수정할 겨를이 없었는데, 올해의 농사가 신임년 때처럼 흉년이 아니라면 『선원보략』을 수정하는 것이 도리에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조는 종부시에서 교정청을 설치하여 수정을 담당하도록 재가하였다.

또한 송인명은 一提調 驪川君이 子孫錄의 수정 연한이 멀지 않아 수년 사이에 재차 교정청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금번에 『선원보략』을 수정하게 되면 자손록도 함께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음을 아뢰었다. 송인명은 『선원보략』과 자손록을 함께 수정하게 되면 공역이 더욱 커지게 됨을 염려하였다. 영조는 무신년 이후의 자손록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으니 반드시 간략하게 할 것을 명하였다. ³⁷⁾ 이에 따라 7월 17일에 무신년 이후 逆默罪之類의 官爵을 바로잡고

³⁷⁾ 의剂(1735년, 計14023) 甲寅七月十一日 "藥房入診入侍時 提調宋寅明所啓 璿源部略不無關康濬源錄 戊申 後亦多有釐改者 而連因凶數 有未暇及矣 今年農形站未知问如 而若不至辛壬 則待秋成宜有釐改之擧 臣方待罪宗簿提調 而因循置之 事體終涉苟簡故 敬達 上曰 修正時 或別爲穀廳 或以本寺因爲穀廳 今番則自本寺設廳 爲之可矣 宋寅明曰 一提調驪川君以爲 子孫錄修正年限不遠 數年之間再次設廳重難 今若有釐正之事 則並與子孫錄 修改爲可云 而若如此 則工役恐益浩繁 此爲可慮矣 上曰 戊申後 可以修正矣 然必從簡爲之 可也"

지손록을 수정하기 위한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었다. 38)

9월 24일에 교정청은 의금부와 형조에 1725년(乙巳) 이후 遊戲罪死被謫人과 死罪被謫人을 일일이 베껴 보내 『선원보략』을 때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관문을 발급하였다.³⁹⁾ 10월 28일에 의금부에서 교정청에 관문을 보내어 1725년부터 1735년(甲寅)까지 鞫賦正刑罪人과 杖斃 被謫緣坐處絞梟示罪人 등을 보내왔다.⁴⁰⁾

3. 板木의 조달과 洗補

1) 自作板의 조달 과정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 쓰는 板木은 '自作板'이다. 판목은 板刻에 들어가기 전에 솥에 삶아내는 熟正과 매끄럽게 다듬는 磨正의 鍊板 과정을 거친다. ⁴¹⁾ 판목을 소금물에 삶아 내어 서늘한 바람에 밀리면 판이 뒤틀리지 않으며 조각하기가 쉽다고 한다. ⁴²⁾ 1744년 10월의 경우 영조가 耆老所에 들어간 사실을 『선원보략』에 수정할 때 71장을 改刊하였는데 이 때 쓰인 자작판은 71立이었다. ⁴³⁾ 자작판은 보통 大釜子 하나에 판자 10立씩을 넣고 쪄내는데, 자작판 1립마다 소금 5 홉과 땔감으로 燒木 2개 반이 들어간다. ⁴⁴⁾ 자작판을 쩔 때 반섬[空石]으로 솥을 덮었으며, 大把 구는 자작판을 꺼내거나 뒤적거릴 때 사용하였을 것이다. ⁴⁵⁾ 숙정을 마친 자작판은 磨板軍이 나

³⁸⁾ 의剂(1735년, 〒14023) 同月十七日 啓日 "喀源普略 戊申以後 逆制罪死之類 官爵釐改 及子孫錄修正事 待 秋自本寺設廳舉行事 旣巳命下矣 今巳秋成 依傳教設廳始役之意 敢恪 傳曰 知道"

³⁹⁾ 의제(1735년, 〒14023) 同日(9월 24일) 義禁府及刑曹公事 "爲相考事 節啓下敎 今此 璿原譜略釐改欠 乙巳以後 逆獄罪死被謫人 及死罪被謫人 一一謄送 以爲及時釐改之地向事"

⁴⁰⁾ 의剂(1735년, 〒14023) 同日(10월 28일) "義禁府爲相考 節節 附關內節該 乙巳以後 逆獄罪死被謫人 及死 罪被謫人 凡罪死被謫人 ——騰送事 關是置有亦 自乙巳至甲寅 鞫獄正刑罪人 及杖斃被謫緣坐處絞梟示罪 人等 ——後錄騰爰爲去乎 相考施行向事"

⁴¹⁾ 남권희와 윤인현은 목판 간인에서 판목을 쪄내고 다듬는 鍊板 과정에 대해서 고찰한 바 있다. 南權熙, 2003 「韓國의 木板印刷 研究」『기록문화와 목판의 세계』, 한국국학진흥원, 6-7면 참조; 윤인현의 『선원보략』의 간행과정에 관한 일련의 논문.

^{42) 『}林園經濟志』(보경문화사 영인본, 1983년) 『怡雲志』 卷第七 圖書藏訪 下 鏡印 鏤版法 "鏡刊書籍 楽梨木 為上 梓木次之 裁成板子 用鹽水煮出涼乾 則板不飜窳 且易彫刻也"

⁴³⁾ 자작판을 세는 단위인 '立'은 '葉'에서 온 것으로 의궤에서는 이 둘을 혼용한다. '葉'은 '廣厚板·椴板·長 松板'과 같이 '板(널·판)'으로 된 목재의 수량을 표기할 때 사용한다.

⁴⁴⁾ 의剂(1744년 10월, 元14033) 十月十九日 甘結 "右甘結 節啓下教 耆慶後 璿原譜路續錄卷 柒拾壹張改刊事命下矣 所入自作板柒拾壹立 極澤進排爲於 熟正次 大釜子參坐 大把子貳部 燒木每立貳介半式 鹽伍合式 蓋覆空石玖立"

⁴⁵⁾ 변섬[空石] ① 아무 것도 담지 아니한 섬. 섬은 짚을 엮어 곡식을 담는 그릇 ② 멍석·맷방석·섬 등의 총칭. 김연주, 2009 『영건의궤(營建儀軌)류의 차자 표기 연구』, 아세이문화사, 294—295면. 把는 그릇이

무를 다듬는 속새[木賊]로 마정한다.46)

연관 과정을 거친 자작판에 시자관이 필시한 正書本을 뒤집어 膠末로 붙이는데 이를 '付板'이라 한다. 47 정서본은 寫字官이 『선원보략』에서 수정할 張을 眞墨과 糊末을 함께 갈아 黃筆로 쓴 것이다. 48 부판의 글자 모양을 각수가 판각하게 되는데, 이 정서본을 '付板正書正書入刻本·入梓正書'라고 칭한다. 49 한국서지학에서는 이를 '板刻用淨書本·開板用淨書本·上梓用淨書本·登梓用淨書本'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줄여서 '板書本·登梓本'으로 지칭한다. 50

판각을 마친 자작판은 양끝에 마고리[莫古里]를 붙이는데 3寸釘 못[바기, 朴只]으로 양쪽 상하네 곳을 고정시킨다. '마고리'는 '어떤 시물의 끝을 마무리하여 막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길쭉한 물건의 양 끝에 대는 것'이다.⁵¹⁾ 자작판 하나의 마고리에 사용된 재목은 '小條里' 2척8촌씩이다.⁵²⁾ 책판의 마고리는 글자를 새긴 부분이 맞닿는 것을 방지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목판이 휘는 것을 막아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⁵³⁾

『선원보략』의 판목인 '自作板'의 '自作은 의궤에 쓰인 차자 표기를 감안할 때 '자작나무'의 음차임을 유추할 수 있다. ⁵⁰ '자작나무'라는 이름은 나무를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가 나서 붙인 이름이다. 자작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소리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 나무속에 기름기가 많기 때문이다. 자작나무는 나무의 질이 좋고 잘 썩지 않으며 벌레가 안 먹어서 건축재와 조각재 등에 좋다. 황백색의 자작나무 속은 깨끗하고 균일해서 팔만대장경판도 자작나무로 만들었다. ⁵⁵ 팔만대장경의 판목은 산벚나무류(64%)·돌배나무류(14%)·자작나무류(9%)·충층나무류(6%) 등의 수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⁵⁶

나 연장 따위의 자루나 손잡이.

⁴⁶⁾ 의剂(1725년) 乙巳正月十二日 "右甘結 節啓下 今次營願部格伽紫修正時所用 付板竹淸精潔白紙拾張 黃筆 眞墨各壹 自作板陸立 糊末參合 熟正次應木貳拾箇 大釜壹坐 鹽伍升 磨正次木賊陸兩 强軟礪石壹塊 大馬 槽壹坐 小桶壹坐 木擧乃壹坐…磨板軍壹名…等物 當刻內進排 與定送事".『物名括』(计12298),「草木類」"木賊 속새"

⁴⁷⁾ 의剂(1727년, 귀14022) 十一月初九日 "右甘結 今此 璿源譜紀成與時 付板膠末不足爲在 壹升當刻內進排事 戶曹 禮客寺"

⁴⁸⁾ 의剂(1727년, 귀14022) 十一月初二日"付板正書 寫字官所用 黃筆貳柄 眞墨貳丁 糊末肆合 方文里貳介 急急進排事"

⁴⁹⁾ 의궤에는 '付板正書'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⁵⁰⁾ 천혜봉, 2007 『한국서지학』, 민음사, 156-160면; 서지학개론 편찬위원회, 2005 『서지학개론』, 110-111 면, 한울아카데미; 장원연, 2009 『조선시대 서책의 교정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第42輯, 書誌學會, 539-541 면.

⁵¹⁾ 김연주, 2009 『영건의궤(營建儀軌)류의 차자 표기 연구』, 아세아문화사, 203-205면,

⁵²⁾ 의궤(1725년, 〒14017) 乙巳正月三十日 "右甘結 今次瑜源部絡剛牒修正時 板子陸立莫古里次 每立材木小條里 貳尺捌寸式 朴只參寸釘 每立肆箇式 進排爲**於**"

⁵³⁾ 南權熙, 2003 「韓國의 木板印刷 硏究」 『기록문화와 목판의 세계』, 한국국학진흥원, 107면 참조.

^{54) &#}x27;자작나무科'에 속하는 나무는 '자작나무·박달나무(朴達木)·거제수나무·서어나무·오리나무(五里木)' 등이다.

⁵⁵⁾ 강판권, 2010 『나무사전』, 글항아리, 1049-1052면, 자작나무의 중국 한자표기는 '白樺 白檀木'이다.

자작판은 『선원보략』의 책판 외에 冊衣에 문양을 밀어낼 때 쓰는 菱花板도 자작판으로 만들었다. [57] 또한 어람 의궤의 印札板을 자작판으로 만든 사례가 있다. 1718년 왕세자빈(端談嬪)의 빈궁도감과 혼궁도감의 儀動廳을 東曹에 배설하고 의궤를 필사하기 위해 먼저 인찰판을 만들었던 것이다. [58] 서유구는 책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는데 판목으로는 대추나무와 배나무가 가장 좋고 가래나무가 다음이라고 했다. [59] 판목의 크기는 너비 1尺, 길이 7·8寸을 넘어서는 안되며 차라리 작은 것이 낫지 커서는 안 된다고 한다. 판목이 크게 되면 목재와 종이가 낭비될뿐 아니라 서책의 권질이 너무 거칠고 무겁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책판을 새길 때의 格(광곽)은 단변으로 하고 行數는 19항에서 20항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60]

『萬機要覽』의 財用編 各頁 항목에 의하면 교서관에 自作板과 黃楊木이 있다. 자작판은 每立에 五斗이고, 황양목은 每條에 一石十斗로 모두 강원도의 공물이다.⁶¹⁾ 黃楊木은 글자를 조각할 때 쓴 나무인데, '회양목과'에 속하는 회양목이다.⁶²⁾ 회양목은 강원도 회양 지역에서 많이 생신하였는데 나무질이 균일하고 단단하여 도장이나 호패를 만들 때 사용하였다.⁶³⁾

종부시나 교정청에서는 『선원보략』을 수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작판을 교서관에 關文을 발급하여 요청하였다. 자작판이 어떠한 경로로 교서관에 공급되었는가는 1719년(숙종 45) 자작판을 둘러싼 종부시와 교서관의 마찰을 통해 알 수 있다. 1719년 6월 28일 종부시는 자작판을 熟正하고 磨板하는데 여러 날이 걸리므로, 자작판 150立을 판각 일자보다 앞서 가져와 미리 磨正하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판단하여 당상에게 품목을 올렸다. 당상은 자작판은 교서관에서 각별하게 골라 받고 일시에 진배하도록 분부하라고 결재하였다.64) 이에 종부시에서 당상의 데김[顯辭]을 감

⁵⁶⁾ 박상진, 1997 「목판의 수종분석과 보존현황」 『修多羅』 12집, 160-173면(남권희, 앞의 논문. 재인용).

^{57) 『}顯宗實錄纂修廳儀軌』『印出諸具』"綾花板一立 以自作板用"(서울大學校奎章閣 影印本, 2003년, 127면). 『英宗大王實錄廳儀軌』庚子八月二十二日(1780년 8월 22일) "右甘結爲 正本冊衣所入 菱花板開刊次 有長 廣好品自作板一立 極擇進排事 戶曹 校書館"(서울大學校奎章閣 影印本, 2004년, 340면).

^{58) 『}端潔療館宮都監儀軌』(1718년, 计13574) 戊戌四月十五日 甘結铁 "今此儀軌 排設於吏曹爲如乎 儀軌時 印札板所用 自作板一立 印出次 大節常墨一同 尾箒二柄 馬擊十兩 黃蜜五兩;同月(4월)二十五日, "御覽儀軌時 印札板造作次 彫刻匠刻手匠各一名定送爲於 印札所用 唐朱紅一兩五邊 臟脂三片 阿膠三兩 書寫所用長床二坐 書板五箇 長尺二箇 延日礪石二塊 用還次進排事"

^{59) 『}林園經濟志』 『怡雲志』 卷第七 圖書藏訪 下 鍰印 鏤版法 "鍰刊書籍 棗梨木爲上 梓木次之"(보경문회사, 1983년). 『物名括』 「草木類」(규12298) "梓 노나무". 서유가가 언급한 대추나무·배나무·가래나무는 중 국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60) 『}林園經濟志』『怡雲志』卷第七 圖書藏訪 下 銀印 鏤版法 "板之廣 不可過一尺 長不可過七八寸 大抵寧小 母大 大則費棗梨費紙楮 又患卷帙太麞重也 格用單邊(宋刻皆單邊) 行宜十九或二十(보경문화사, 1983년)

^{61) 『}萬機要覽』 財用編一,各貢,校書館 〇米一千二百六十六石九斗二升五合 嶺南二等 湖南三等 湖西三等 江 原單等 冊紙次草注紙(每貼七斗五升 嶺南) 卷冊紙次楮注紙(每卷七斗五升 兩湖) 衣紙(每卷一石十斗 兩湖) 時政記紙(每貼八斗 湖南) 自作板(每立五斗 江原) 黃楊木(每條一石十斗 江原)

^{62) 『}英宗大王實錄廳儀勒』,辛丑四月初五日,"右甘結爲 刻字次 黃楊木 熟正時 燒木五丹 進排事 司宰監"(서울 大學校奎章閣, 2004년, 350면).

⁶³⁾ 강판권, 앞의 책(2010), 389-393면.

⁶⁴⁾ 의궤(1719년, 귀14014) 同月(6월)二十八日 禀目, "譜略修正時 應入板子 似不下二百餘立 而多般鍊正之際

결에 점련하여 교서관에 내렸는데, 7월 1일 안에 당해 色東가 교정청에 들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정청에서는 7월 1일에 진배하는 자작판을 당상이 근무할 때 看品할 것이니 날이 밝으면 색리는 거느리고 와서 대령하라고 교서관에 감결을 내렸다. $^{66)}$

그런데 교서관에서 뜻밖의 소식을 종부시에 첩보하였다. 교서관에서 서리들에게 교서관에 속한 자작판 進排人 등에게 기일을 정해 독봉하라고 각별히 분부하였더니 서리들이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발괄[白活]하였다.⁶⁷⁾

"지금의 자작판 공물은 (責價를) 받는 것이 零星하여 본전에 밑지는 것이 이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공물) 主人이 없어 서리 한 사람이 일 년씩 돌아가며 맡고 있는데, 값을 받은 후에 진배를 감당하지 못하고 혹은 사망하여 一族도 없는 자가 있습니다. 각처에서 진배하라는 령이 있게 되면 본관에서는 징수할 곳이 없으니, 일후의 무궁한 폐는 앞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전에 재동의 우의정 대감께서 제조에 望定되었을 때 이러한 폐를 통촉하여, 저희들이 별도로 都庫를 맡아 受價로 진배할 재목들을 요리하도록 또한 분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부대로 새로 도고를 맡은 지 거의 삼년이 됩니다. 그 사이 목판을 모은 것이 300호에 이르는데, 지난 번 본관에서 진상할 『주자어록』을 開刊할 때에 목판을 진배한 수가 합이 220호에 이릅니다. 이제 종부시의 분부로 인하여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에 쓸 판자를 한결같이 『주자어록』 때에 쓴 것과 같이 좋은 것을 골라 진배한다면 종부시의 분부 안에 이것은 자작판이 아니라고 모두 물려 내고, 色東가 笞杖을 맞는데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분주하게 각처에서 구하였으나 이것은 京山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시장에서 매매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막중한 『선원보략』에 쓸 것이 만약 정한 날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희들의 生事는 우선 논할 겨를도 없이 官家에 生事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허다한 판자를 일시에 진배하라는 것은 죽음 외에는 다른 대책이 다시 없습니다."68)

必費多日是去乎 板子一百五十立 為先取用 預為磨正 越時赴役事 甚便當是去乎 所入雜物 依後錄棒甘 各該司取用 何如禀 後 自作板壹百伍拾立 板子熟正燒木壹百捌拾介 鹽肆斗伍升 木贼肆斤拾壹兩 大釜伍坐每壹部板子拾立式 大馬槽伍坐 强軟碼石各壹塊 木手小木匠各貳名 磨板軍伍名 堂上手決內 依為去乎 板子段 自本館各別擇棒 一時進排事 分付宜當"

⁶⁵⁾ 의剂(1719년, 규14014) 同日(6월 28일) 粘連甘結 "右甘結爲 粘連手決內辭緣相考 卽卽進排爲乎矣 板子依 顯辭 自本館極擇棒上 來七月初一日內 當該色吏領納本廳事"

⁶⁶⁾ 의궤(1719년, 규14014) 同日(6월 28일) 甘結 "右甘結 今此 璿原譜略修正時 所入自作板壹百伍拾立 來七月初一日內進排事 捧甘爲有如乎 同日堂上坐起時 看品次 平明時色吏領來待令事 校書館"

⁶⁷⁾ 발괄[白活]은 서민이나 下吏가 관원에게 陳情하는 것.

⁶⁸⁾ 의剂(1719년, 귀14014) 同日(6월 28일) 校書館講報內 "校書館爲撰報事 本廳甘結內 今此 璿源譜略修正時 所入板子 壹百伍拾立 爲先自本館譯棒 來七月初一日內進排事 捧甘乙用良 官屬進排人等處 各別分付刻期 督棒爲如乎 本館書吏等 齊聲白活內以爲 '今夫自作板貢物 所受零星落本頗多 故自古元無主人 而書吏一人 式一年輪差見任 而受價之後不堪進排 或有死亡無一族者 至於各處有進排之令 則本館無處可徵 日後無窮之弊 將有不可勝言者矣 年前良中 灾洞右藏政大監教是 提調望定時 洞燭此弊 使矣徒等別股都庫 以爲受價料 理進排木物之地 亦分付教是乎等以 矣徒等 依分付新役都庫 僅效三年矣 其間鳩聚木板 乃至於三百餘立 而 垣於本館進上朱子語錄 開刊時木板進排之數 合至於貳百貳拾立 而今因宗簿寺分付 譜略修正時 所用板子

교서관 서리들의 발괄을 통해 자작판의 貢價에 비해 時價가 비싸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많아 자작판 공물주인이 없어 서리들이 직접 도고를 운영하여 자작판을 구하였다. 또한 자작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기한 내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 서리와 색리들은 答杖에서 죽음에 이르는 책임을 감수해야만 했다. 교서관에서는 서리들의 발괄을 종부시에 첩보하면서 서리들의 호소가 거짓이 아니며, 서적 아문인 교서관에서 쓸 수 있는 목판과 쓸 수 없는 목판을 알지 못하겠느냐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교서관의 공물 판지는 이름은 비록 자작판이지만 책판을 개긴하는 데에 있어 모두 자작판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잡목 중 '古里樹' 같은 나무는 견고하고 세밀하여 자작판보다 더욱 좋아, 교서관에서 보통 進上冊을 개간할 때에 고리수를 많이 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서관에서 판목을 골라 받아들일 때 자작인지 고리수인지를 무론하고 쓸만한 精板을 150판자를 준비되는 대로 진배할 것이나 특별히 허락하여 달라는 것이다. ⁶⁹⁾

이에 대해 종부시 당상은 막중한 책판은 예로부터 자작판으로 거두어 들였으니 고리수로 진 배해서는 안 되며, 수일 내에 진배하기 어렵다면 준비되는 대로 들이라고 하였다.⁷⁰⁾ 교서관에서 올린 첩정에 대해 종부시 당상이 데김하였고, 이 첩정에 데김대로 거행하라는 감결을 점련하여 내렸다. 교서관과 종부시의 마찰에서 보듯이 자작판은 당시 가장 우수한 판목으로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35년 7월 16일 종부시는 『선원보략』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두텁고 깨끗한 자작판 3백여 立을 미리 준비하여 대령하였다가 감결을 받는 즉시 진배하라고 교서관에 關文을 보냈다.⁷¹⁾ 이에 교서관에서는 7월 20일에 교서관에 있는 자작판은 깨지고 썩어 쓸 만한 자작판이 하나도 없다는 첩정을 보내 왔다. 교서관은 役事이 클 경우에는 자작판이 생산되는 官에 卜定하여 취용하는 것이 규레이니. 첩정을 받는 즉시 종부시에서 필요한 자작판을 복정하라고 첩보하였다. 종부시 당

一如朱子語錄時所用 極擇進排 則本寺教是分付內以為 此非自作板是如 盡為退出 而色吏至被答杖乙仍于 矣徒等四散 奔走各處求覓是白乎矣 此非京山所產 亦非市上買買之物 故實難覓得 而莫重瑢源部格所用 若 未及於定日 則矣徒等生事 姑不閱論 而其生事於官家必矣 許多板子一時進排 有死之外更無他策"以此辭緣 論報本寺"

⁶⁹⁾ 의례(1719년, 帝14014) 同日(6월 28일) 校書館撲報內 "其矣等貢物板子 名雖自作 而至於冊板開刊 則不必盡用自作 雜木中至若古里樹 則堅精尤勝於自作 故本館凡進上冊開刊時 多取於古里樹者 豈無所油然而然耶今此本寺之必欲取自作板 而退古里樹者 想必是匠人之誣告是齊 今此本館署奉中 若有可用精板 則勿論自作 與古里樹 隨其所納 各別署奉進制計料是在果 壹百伍拾立板子 其矣等 旣無豫備之事 則一日之內勢難 責其準納 隨其署奉鱗次 進制計料是去乎 本寺教是參商事勢 姑爲差退日字 連續進制事 特爲行下 一以爲無弊爲 於 一以爲公私便宜之地爲只爲"

⁷⁰⁾ 의궤(1719년, 귀14014) 同日(6월 28일) 校書館諜報內 "題辭內 前弊端颇听報 而莫重冊板 自古以自作板收捧 則今不可以古里樹進排 數日內雖不得進排 鱗次來納 宜當"

⁷¹⁾ 의剂(1735년, 〒14023) 同月(7월)十六日 校書館公事 "爲相考事 藥房入診時 提調宋寅明所啓云云事 傳教 據所入板子計之 則將至三百餘立是如呼 同自作板以敦厚正潔者 豫爲侍令爲有如可 捧甘即時進排 俾無臨時 窘迫之弊向事"

상은 이에 대해 자작판을 종부시에서 복정한 규례가 없었는데, 그와 같은 규례를 새로이 만들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에 보낸 관문에 의해 자작판을 준비하였다가 감결을 받으면 진배하라고 데김하였다.⁷²⁾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기요람』의 '各頁' 항목에 의하면 자작판은 每立에 五斗이다. 1754년 6월 17일에 李喆輔가 영조에게 『四書三經』을 목판으로 간인하려면 자작판 千立이 들어가는데 그 값이 千兩이라고 이뢴 것으로 보아 자작판 1立의 값은 1兩이다. ⁷³⁾ 『만기요람』에는 1785년의 '各司有元貢別貿'에 교서관의 자작판이 '價折錢 213兩으로 되어 있다. ⁷⁴⁾

고종대 侍講院의 冊役所에서는 세자궁에 들일 책자를 간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작판을 호조에서 미련하여 수송할 것을 관문으로 요청하였다. 또한 책역소에서는 加平郡庁에게 관문을 보내어 자작판을 사오기 위해 監官 朴成實을 내려 보내니, 관문이 도착하면 各該 頭民에게 신착하여 감관이 오래 머무르는 폐가 없도록 하라고 했다. 75)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선원보략』의 책판 6立이 현전하고 있는데, 모두 한 면에만 판각되어 있다.⁷⁶⁾ 이 중 5립의 책판은 정조의 御製인 「璿源系譜紀略序」에 해당하는 책판이다. 정조는 1783년 이전까지 없었던 『선원보략』의 서문을 찬하였는데, 1783년 1월 16일에 어제서문을 판각하라고 명하였다.⁷⁷⁾ 나머지 1립은 '17卷의 張次 3'인데 어느 해의 간본에 해당하는 책판 인지 실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⁷⁸⁾

⁷²⁾ 의剂(1735년, 元14023) 同月(7월) 二十日, "校書館爲相考事 節節州關內節該 璿源錄修正時 所入自作板三百餘立 豫爲待令爲有如可 捧甘即時進排事 關是置有亦 本館曾備板子 年久折破且多朽傷 無一可用 誠爲悶慮是在果 大抵此木本非京山所産 亦非市上買賣之物 則許多可用板子 所備末由 若無及今變通 則前頭生事之患 勢所必然是去乎 曾前段置 若值巨役 則所確官良中卜定取用 自是規例是乎等以 如是論報爲去乎 到牒即時 自貴寺隨所入 變通卜定 俾無臨時窘治生梗之地爲只爲 堂上題辭內 所備板子 自本寺曾無卜定之規 報辭雖如此,萬無創開之理 依前關措 備待令是如可 捧甘即時 依數進排 俾無生事之弊 向事"

^{73)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6월 17일 "(李)詩輔曰 曾因吏判陳達 四書三經所刻自作板千立 令該曹待秋輸送事 有命 而自作板千立 其價爲一千兩 此時 此等事實難舉行 故敢達 上曰 此非汲汲之事 姑置之 可也"

^{74) 『}萬機要覽』 財用編三 戶曹貢物 別貿—年貢價、「正宗乙巳年 各司有元貢別貿」 '乙巳爲中年 各司有元貢別 貿 校書館 自作板 價折錢二百十三兩'

^{75) 『}侍講院冊役所日記』(3K2-2780,1879-1880년) "爲相考事 今此世子宮內入 新刊冊子 童蒙先瞀通鑑史略續 史略全韻玉篇 所刊自作板 定計上磨鍊輸送之地 宜當向事(戶曹). 爲相考事 今此世子宮內入 新刊冊子 童蒙 先瞀通鑑史略續史略全韻玉篇 所刊自作板資來次 監官朴成實 別定下送爲去乎 關到後 另節於各該頭民處 傳無久留之弊 宜當向事 加平郡守"

⁷⁶⁾ 청구기호는 '奎木43'으로 목판번호는 '8833-8838'이다. 목판의 크기는 26x56cm이고, 광곽은 시주상변, 20x40cm, 有界 12行10字, 內向三葉花紋魚尾. 서문의 5장은 왼쪽에 [奎章之寶]를 새기기 위해 한 항에 11자를 새겨 넣었다.

⁷⁷⁾ 의궤(1783년, 卅14097) 同月十六日 "左承旨入侍時 傳曰 璿原譜略 御製序文草本 既巳校正當遍示時 原任 大臣閣臣 一兩日內 可以入刻 而原篇校正處 亦多有下旬事"

^{78) 『}奎章閣所藏 冊板目錄』(서울大學校 奎章閣, 2004년), 55-56면. 이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책판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2) 『선원계보기략』의 洗補

본 논문의 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영조대에 『선원계보기략』을 수정할 때의 특징으로 遊獻 관련 子孫錄의 수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선원보략』이 족보이기 때문에 지손록에서 지주 수정되는 사항이 있다. 『선원보략』은 여느 책과 마찬가지로 張灰가 판심에 새겨져 있지만, 지손록의 경우 판심 위의 광곽 오른쪽에 『천자문』의 순서로 漢字의 장차가 함께 매겨져 있다. 종 부시나 교정청에서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 考准할 일이 있으면 『字彙』나 『千字文』을 참고하였다. 이 책들은 교서관에서 가져온 것으로 수정의 역이 끝나면 원래대로 교서관에 돌려주었다. 79)

한 자손이 자손록의 여러 곳에 수록될 경우 해당하는 장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小註에 '見〇'라고 표기하여, '○張에 그 자손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준다. 그러므로 새로 태어난 자손을 添入하거나 소주의 내용이 새로 추가되면 자손록의 行數가 차차 밀려 나게 되어 이전 『선원보략』의 장차와 달라지게 된다. 영조대 『선원보략』 수정시에는 이 달라진 장치를 수정할 때에 洗練를 적극 활용하였다.

'洗補'란 어떻게 수정하는 것인기는 用例를 통해 알 수 있다. 1598년 관상감에서 曆書 인출과 관련하여 세보하여 반포할 것을 아뢰자, 선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시 게으르고 조심스럽지 못한데 수천부의 역서를 그 누가 일일이 세보하겠는기"하였다. 1727년 3월 9일에 민진원은 실록을 활자로 인출할 경우 한자라도 오자가 있을 때마다 全板을 헐고 고쳐서 활자를 배열하니 공역이 마칠 기약이 없다고 아뢰었다. 그는 공역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차후에는 잘못된 곳이 ① 华行이거나 1, 2행으로 많을 경우만 활자를 고쳐 배열하고 ② 1—2자에서 5—6자는 세보하여도 무방할 듯 하다고 아뢰어 영조의 허락을 받았다. 이후 민진원이 『승정원일기』를 상고해보니 1689년(숙종 15) 이후에는 '글자의 왼쪽확인 偏과 오른쪽확인 傍의 1—2자 외에는 세보하지 말도록 정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세보를 편방의 한 두 글자에 한해서 허락한 것이다.

3월 27일에 민진원은 한 장에서 오자가 1-2자일 때만 세보할 것인지 아니면 5-6자까지 세보를 허락할 것인가를 다시 영조에게 물었다. 이 때 영조는 세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자 민진 원은 印出 후에 唱準할 때에 오자가 있으면 그 오자가 있는 곳을 잘라 버리고 글자를 고쳐서 보완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민진원의 대답을 들은 영조는 1-2자는 5-6자에 비해 크게 차이가

⁷⁹⁾ 의제(1735년, 규14023) 同日(11월 19일) 甘結 "右甘結進拜事 譜略修正時 有考准事 字彙一秩 用後還下次 進拜事 校書館"

^{80)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2일 "我國人心 素慢不謹 累千部曆書 其誰一一洗補"

^{81) 『}含对원일기』 영조3년 3월 9일 "(都提調閱鎭遠) 又啓曰 臣曾見祖宗朝實錄 則多有洗補處 或多至數行 似為未安 故今番則必欲勿為洗補矣 始役之後 見其壽字載板之工 極為煩細難就 若以一字之誤 輒皆毀全板而改排之 則功役將無完訖之期 此誠悶慮 此後則差誤處 若至半行或一二行之多 則使之改排 而自一二字至五六字 則洗補似為無妨 欲為定奪矣 上曰 印役已始耶 鎭遠曰 已自初一日始印 而功役極煩 故逐日所印 不過五六板 前頭手熟後 板數雖或稍加 大抵十餘朔內 似難訖工 大悶矣 上曰 依所達為之"

없으니 전의 정탈한 대로 세보하라고 하였다.⁸²⁾ 이상에서 살펴 본 역서와 실록의 경우는 인출후에 오자가 발견되어 해당 글자를 잘라 내고 수정하여 보완한 사례로 이제까지 세보에 대해 알고 있었던 개념과 동일한 사례이다.

이와는 달리 영조대에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에는 세보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야 하는 사례가 있다. 영조가 즉위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1725년의 『선원보략』 수정은 경종의 諡號廟號陵號와 영조의 嗣位에 관한 것이다. 이 때 1723년에 수정한 『선원보략』을 收聚하여 수정하는 규정을 세 가지로 정탈하였는데, 每張에서 ① 4처 以上 改印② 3처 以下 洗補 仍用 ③ 1-2 처라도 字數가 많으면 改印하기로 하였다. 83)이 규정을 보면 『선원보략』을 수정하는 방법을 글자 수에 따라 改印과 洗補로 나누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선원보략』의 每張에서 수정해야 할 곳이 네 곳 이상이거나 한 두 곳에 불과하더라도 자수가 많으면 해당 장의 책판을 다시 새겨 인출하는 것을 '改印'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서 수정해야 할 곳이 세 곳 이하이거나 자수가 적을 경우에는 1723년의 『선원보략』을 '洗補'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때의 세보는 『선원보략』 全卷을 새로 인출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전 『선원보략』에서 수정할 부분을 잘라 내어 보완하는 것으로, 서책의 종이를 세보하는 방법과 책판을 세보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서책을 인출한 뒤 발견된 오자를 수정하기 위한 세보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1727년 의궤의 말미에는 「譜略修改處」가 수록되어 있다. 子孫錄의 小註를 수정해야 하는 곳은 '見○改○'로 기록하였다. ⁸⁴⁾ 예를 들면, '歲字張 密豊君 小註 見如改松'은 張次가 『천자문』의 순서에서 '歲인 장에 '密豊君'이 나오는데 그 小註에 '見如라고 써 있는 것을 '見松'으로 수정하라는 것이다. 즉 수정해야 할 글자는 '如 대신 '松'으로 한 글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손록을 수정할 때에 세보가 적극 활용되었다. 또한 새로 태어난 翁主를 '馨字 張에 첨입하였기 때문에 行數가 차가 밀려나 '馨'如'松·之·盛'川·流·不·息·淵·澄取·映容'에 해당하는 14장의 책판을 고쳐서 판각하였다. ⁸⁵⁾ 영조대 『선원보략』 수정시에 改印한 곳은 보통 범례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과 「璿源世系」와 「列聖繼序之圖」 등이다.

<부록 3>은 1744년 10월에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 세보한 곳을 기록한 「洗補記」이다. 이 「세보기」에는 卷數(篇)·張(丈)·千字文·人名·洗補處를 밝혀 놓았다. 「세보기」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예를 들면 지속록 권2 첫 장의 張次는 탈인데 그 장에 수록된 男永壽와 男. 두 곳의 小

^{82) 『}合对원일기』 영조 3년 3월 27일 "閱鎖遠所啓 實銀印出時 限五六字許令洗補事 頃麓定奪矣退考日記 則己已後 已有定奪之事 偏傍一二字外 勿令洗補矣 第念洗補 只許偏傍一二字 則功役實難易就 依臣所達 限五六字 許令洗補 而至於全字 則限一二字 亦許洗補 何如 上曰 所謂洗補者 何也 鎭遠曰 印出後唱準時 若有誤字 則隨其誤處而割去改補 謂之洗補也 上曰 然則一二字之於五六字 不甚相遠 依前定奪爲之 可也"

⁸³⁾ 의궤(1725년, 규14017) 乙巳七月初六日 定奪.

^{84) 1744}년의 경우에는 '見〇作〇'으로 수정 사항을 지시하였다.

⁸⁵⁾ 의궤(1727년, 규14022) 「譜略修改處」"警字張 新生翁主添入故 行數次次推退 至容字十四張 改板"

註에 '新祥宮'을 인출하여 넣으라는 것이다.²⁰⁰ <그림 3>은 1740년 『선원보략』(규8751) 권2 첫 장의 男永壽가 수록된 부분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男永壽의 소주에 '淑嬪崔氏出'이라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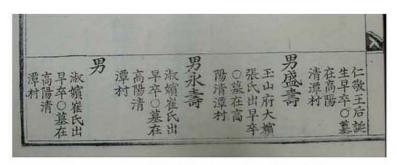


그림 3 1740년 『선원보략』(至8751) 권2 '淑嬪崔氏'

이것을 1744년 「세보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男永壽'의 소주 '納殯崔氏出' 앞에 '蘇祥宮'을 넣어 인출한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에서 '男永壽'의 소주를 수정한 방법은 1740년 『선원보략』에서 소주를 잘라 내고, '蘇祥宮納嬪崔氏出早卒 ○墓在高場淸潭村'이라는 소주를 새로 인출하여 해당 부분에 붙여 넣었다. 소주를 수정하여 인출할 때에 필요한 자작판을 의궤에서는 洗補次 自作板으로 기록하고 있다. 새로 세보한 종이는 인출 부분이 세로 4,2cm, 가로 3,6cm의 크기인데, 소주 둘레를 1.5cm 여유 있게 자른 印出紙 자체이다. 이 종이를 이전의 界主를 그대로 살려되에서 덧대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세보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없다.87



그림 4 1744년 『선원보략』(奎8739) 권2 '統祥宮淑嬪崔氏'

^{86) 1725}년 숙빈최씨의 사당을 경북궁의 북쪽에 건립하고 '滅國廟라 일컫다가, 1744년에 숙빈최씨의 기일을 맞아 '納祥廟'로 정하였다. 李賢珍, 2009 「영·정조대 육상궁의 조성과 운영』「震檀學報』第107號 展檀學會, 100면.

^{87) 1744}년 【선원보략』(규8739)의 권7의 경우 <부록 3>의 '세보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세보되지 않았고 이 전의 소주 그대로였다. 다만 19장의 柳燁의 소주는 '見弁'으로 수정되었는데, 세보가 이난 改印의 방법이다.

위와는 달리 『선원보략』의 지손록 중 소주를 수정할 때 목판 전체를 다시 새기지 않고, 舊板 子의 해당 부분을 도려내고, 자작판에 새로 글자를 새기어 無膠를 발라 파낸 자리를 메웠다. ⁸⁸⁾ 구판자를 개각하여 세보할 때 필요한 자작판을 의궤에서는 '補孔次 自作板으로 칭한다. 이 작업은 寫字官·刻手·蹄刻匠·小木匠이 동원되어 진행되었다. 『선원보략』 외에 책판을 세보하여 수정한 예가 실록에도 나와 있다. 1748년 영조는 『동몽선습』의 끝 章에 고려 공앙왕의 이름인 '瑶'를 斥書한 것을 보고, 교서관에서 舊板을 세보하여 공앙왕의 廟號를 쓰라고 명하였다. ⁸⁰⁾ 즉 冊板에서 공앙왕의 이름을 드러내 적은 부분을 도려내고 묘호를 써서 보공하라는 것이다.

이로써 세보가 인출한 서책을 수정할 때 뿐 만이 아니라 冊板을 수정할 때에도 지칭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목판으로 일반 서책을 간인할 때에 板刻을 마치면 初見 印出과 再見 인출을 통하여 誤字를 교정하게 된다. 이때 木板에서 오지를 도려내고 새로 새긴 글지를 끼워 넣는 것을 한국서지학에는 '象嵌'이라 칭하고, 일본에서는 '埋木'이라 일컫고 있다.⁵⁰⁾ 이제는 세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맺음말

영조대의 『선원보략』 수정은 숙종대부터 간인되어온 『선원보략』을 지속해나가려는 의지와 『선원보략』 수정에 들어가는 경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영조대 『선원보략』 수정의궤』를 분석하여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의 특징을 살펴보고, 판목의 조달과 세보에 대해 고찰하였다. 『선원보략』의 수정 여부는 事體 즉 의례의 비중에 있었으며 이는 교정청의 설청여부와도 연관되었다. 영조 재위 52년간은 복잡한 정치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역옥과 관련된 삭탈관작과 복직이 번복되었으며, 『선원보략』의 자손록 중 소주가 수정되었다.

『선원보략』을 수정하여 간인할 때 쓰는 판목은 자작판이다. 자작판은 貢物主人이 없어 교서 관의 서리들이 도고를 맡아 마련하였는데 많은 양을 일시에 구하기가 어려웠다. 영조대 『선원보 략』의 수정은 改印보다 세보가 적극 활용되었다. 『선원보략』의 세보란 구판자에서 수정할 부분 을 도려내고 새로 새긴 글자로 메우는 것과. 이정의 『선원보략』에서 해당 부분을 잘라 버리고

⁸⁸⁾ 의讯(1727년, 〒14022), 十一月十五日 "右甘結 今此璿願譜略改修時 補孔次 謄錄所付匠人金萬昌 當刻內 定送爲於 魚膠壹張 亦爲星火進排事 戶曹 軍器寺 內需司"; 十二月十一日 戶曹公事 "譜略子孫錄小註中 可改處改刻乙仍于 舊板子鐫削補孔開刊矣"

^{89) 『}영조실록』67권, 영조 24년 6월 13일 "命改童蒙先習 上覽童蒙先習末章 高麗恭讓王瑤 斥書其名 上謂侍 臣曰 我太祖嘗北面事恭讓王矣 此非列祖待前朝之意 其令芸館 洗補舊板 書其廟號"

⁹⁰⁾ 천혜봉, 2007 『한국서지학』, 민음사, 159-160면.

새로 인출한 부분으로 덧대는 것을 가리킨다.

『선원보략수정의궤』에는 『선원보략』의 총서를 비롯한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당시의 情勢와 목판 간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조선후기 『선원보략』에 대한 이해와 목판 간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선원보략수정의궤』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시도되어 야 한다. 목판으로 한 권의 책을 간인하기까지 종이와 먹 등의 재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조달되었는지, 각 匠人들의 세분화된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동원하였는지 등 목판 간인을 둘러싼 제요소들의 실상을 탐색하고, 당대의 정치와 경제 기반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주제어: 『선원계보기략』, 교정청, 수정, 자작판, 세보, 삭탈관작

접수일(2010, 5, 28), 심사시작일(2010, 5, 31), 게재확정일(2010, 6, 11)

<참고문헌>

자료

『萬機要覽』(민족문화추진회, 1971년)

『璿源譜略修正儀軌』(1725-1776년, 26건)

『侍講院冊役所日記』(NK2-2780, 1879-1880년)

『林園經濟志』(보경문화사 영인본, 1983)

『鑄字所應行節目』(NK2-4676, 1814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장서각소장의궤해제』.

강판권, 2010 『나무사전』, 글항아리.

김연주, 2009 『영건의궤(營建儀軌)류의 차자 표기 연구』, 아세아문화사.

서유구 지음/안대회 엮어옮김, 2006년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1. 목판 간인 연구

南權熙, 2003「韓國의 木板印刷 研究」「기록문화와 목판의 세계」, 한국국학진흥원.

박상진, 2003 「목판 및 종이[韓紙]의 재질분석」『기록문화와 목판의 세계』, 한국국학진흥원,

설석규, 2005 「조선시대 유교목판 제작 배경과 그 의미」 『국학연구』 제6집, 한국국학진흥원.

손계영, 2009 「地方官과 先祖 文集 刊行」 『영남학』 제15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신승운, 2001 「유교사회의 출판문화」 『대동문화연구』 제3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옥영정, 2006「冊板目錄을 통해본 조선시대 쵤ഥ지역의 목판인쇄문화 연구」「書談學研究」第34輯、書談學會.

장원연, 2009 「조선시대 서책의 교정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第42輯, 書誌學會.

채현경, 2008「조선후기 향교소장 서책(書冊) 목록과 관리운영」『書誌學報』第32號.

2. 『선원계보기략』 간인과 판본 연구

尹仁鉉,1992 * **瑜伽永龍和哈』 4 似本研究」, するいやむ サイヤイモモ
,1997「肅宗朝『璿源系譜紀略』板本考』『書誌學研究』第13輯,書誌學會.
, 1997「『璿源系譜紀略』開刊過程과 始刊本 分析」『書誌學研究』第14輯, 書誌學會.
,1997「景宗朝『璿源系譜紀略』板本考」『杏簡尹泳大博士華甲紀念論文集』.
, 2000「英祖朝 4冊本『璿源系譜紀略』板本考」『書誌學研究』第19輯, 書誌學會.
, 2000「『璿源系譜紀略』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書誌學研究』第20輯, 書誌學會.
, 2001「『璿源系譜紀略』肅宗26年本 刊行過程考」『書誌學研究』第22輯, 書誌學會.
, 2002 「凡例와 跋文을 통한 『璿源系譜紀略』의 관본 선별고』 『書誌學研究』 第23輯, 書誌學會
, 2004「『璿源系譜紀略』肅宗28年本 刊行過程考」「書誌學研究」第27輯, 書誌學會.
, 2005 『선원계보기략』경종 3년본 간행과정고』,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7, October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3. 조선왕실과 璿源錄 연구

洪順敏, 1990「조선후기 王室의 구성과 璿源錄」『韓國文化』1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_____, 1990「조선후기《馨源系譜紀略》改刊의 추이」「奎章閣』13, 서울대학교 도서관. 김수경, 1997「17세기후반 宗親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梨大史苑』第三十輯, 梨大史學會. 김일환, 2007「朝鮮後期 王室「八高祖圖」의 성립과정」『藏書閣』제1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갑수, 2009「19세기 종실의 단절 위기와 宗親府 개편」『朝鮮時代史學報』51輯, 朝鮮時 代史學會. 원창애, 2007「조선 후기 선원보첩류의 편찬체제와 그 성격」『藏書閣』제1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李賢珍, 2009「영·정조대 육상궁의 조성과 운영」『震檀學報』第107號, 震檀學會. 임민혁, 2006「조선후기 영조의 孝悌 논리와 私親追崇」『朝鮮時代史學會』39, 朝鮮時代史學會. 정경희, 2004「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서울학연구』23, 서울학연구소. 홍우의, 2007「「璿源系譜紀略」「跋文」연구」『藏書閣』제17집,한국학중앙연구원.

4. 서책 간인시의 匠人 연구: 刻手, 均字匠, 粧冊匠, 搗砧軍

김상호, 1990『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대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9「朝鮮時代 刻手의 石刻 活動考」『書誌學研究』第41輯, 書誌學會,
, 2009 「英祖年間의 王室墓域 石刻役事에 참여한 刻手 硏究」 『書誌學硏究』第43輯, 書誌學會.
, 2009 「『國朝寶鑑』 1782年 板本의 刻手 研究」 『書誌學研究』 第44輯, 書誌學會.
김정미, 2009「正祖代『國朝寶鑑』刊印의 운용실태 연구」『書誌學研究』第44輯, 書誌學會.
옥영정, 2009「조선시대 인쇄관청의 活字印刷 匠人 연구 : 均字匠을 중심으로」「한국문화」47.
조계영, 2006『조선왕실 봉안 서책의 장황과 보존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2007「조선후기 왕실서책 장황시의 도침에 관한 고찰」 『古文書研究』31, 한국고문서학회.
, 2009「조선후기『列聖御製』의 編刊과 保存』『書誌學研究』第44輯, 書誌學會.

<부록 1> 규장각에 현전하는 영조대『선원보략수정의궤』의 현황

년 도 (재위년)	干支		정논의 작일자	청구기호 (張數)	수정 주관처	修正命日子 (총서)
1679(숙종5)	己未	1679년	2월 14일	규13390	종부시	1679년 2월
1700(숙종26)	庚辰	1700년	1월 5일	₩14007	교정청	1700년 6월
1719(숙종45)	己亥	1718년	9월 22일	₩14014	교정청	1719년 7월
1723(경종3)	癸卯	1722년	6월 16일	₩14016	교정청	1723년 10월
1725(영조1)	乙巳	1724년	10월 4일	〒14017(64)	교정청	1725년 8월
1727(영조3)	丁未	1727년	10월 12일	卅 14022(41)	교정청	1727년 12월
1735(영조11)	乙卯	1734년	7월 11일	₩14023(137)	교정청	1735년 1월
1736(영조12)	丙辰	1736년	3월 16일	규14026(29)	종부시	1736년
1739(영조15)	己未	1739년	3월 19일	〒14029(67)	교정청	1739년 6월
1740(영조16)	庚申	1740년	2월 25일	₩14031(63)	종부시	1740년 3월
1740(영조16)	庚申	1740년	7월 21일	규14031(63)	종부시	1740년 8월
1744(영조20) 1월	甲子	1744년	1월 15일	규14033(62)	종부시	1744년 1월
1744(영조20) 10월	甲子	1744년	9월 11일	규14033(62)	교정청	1744년 10월
1747(영조23)	丁卯	1747년	2월 20일	규14035(43)	교정청	1747년 3월
1748(영조24)	戊辰	1748년	2월 28일	규14037(26)	교정청	1748년
1751(영조27)	辛未	1751년	1월 14일	규14039(39)	종부시	1751년 1월
1752(영조28)	壬申	1752년	6월 일	규14045(27)	종부시	1752년
1753(영조29)	癸酉	1753년	5월 12일	규14046(36)	교정청	1753년
1754(영조30)	甲戌	1753년	12월 12일	규14049(27)	교정청	1754년 2월
1755(영조31)	乙亥	1755년	4월 4일	규14053(54)	종부시	1755년 6월
1756(영조32)	丙子	1755년	12월 13일	규14056(27)	종부시	1756년 1월
1757(영조33)	丁丑	1757년	8월 19일	규14059(25)	종부시	1757년 9월
1758(영조34)	戊寅	1758년	3월 1일	규14064(14)	종부시	1758년 3월
1759(영조35)	己卯	1758년	6월 12일	규14067(24)	종부시	1759년 9월
1760(영조36)	庚辰	1759년	9월 28일	〒14070(47)	교정청	1760년 4월
1764(영조40)	甲申	1764년	2월 20일	₸14072(21)	교정청	1764년 2월
1771(영조47)	辛卯	1771년	11월 2일	규14076(7)	교정청	1771년 12월
1772(영조48)	壬辰	1772년	8월 28일	규14079(19)	교정청	1772년 8월
1772(영조48)	壬辰	1772년	11월 2일	〒14080(17)	교정청	1772년 11월
1776(영조52)	丙申	1776년	1월 10일	규14085(22)	종부시	1776년 2월

<부록 2>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영조대의 『선원보략』

년도(재위년)	卷册	凡例 項目	跋文 件數	청구기호
1725년(영조1)	6권 4책	26	6	=
1726년(영조2)	6권 4책	27	6	_
1727년(영조3)	6권 4책	29	6	
1731년(영조7)	6권 4책	32	6	ਜੋ8649∙ਜੋ8722∙ਜੋ8747
1736년(영조12)	8권 7책	43	7	규8737(異本合帙)·(규8744·규8750)
1739년(영조15)	8권 7책	45	8	ਜ8726
1740년 8월(영조16)	8권 7책	47	8	〒8751
1744년 10월(영조20)	8권 7책	48	8	규8739·규8741(異本合帙)
1747년(영조23)	8권 7책	49	8	7 8745−1· 7 8746
1748년(영조24)	8권 7책	50	8	ਜ8776
1751년(영조27)	8권 7책	53	8	균 8763·(ਜ਼8764·ਜ਼8774)
1752년(영조28)	8권 7책	56	8	录8771⋅(录8775)
1753년(영조29)	8권 7책	58	8	균 8765·(균8773)
1754년(영조30)	8권 7책	60	8	규8648·(규8728·규8736)
1755년(영조31)	8권 7책	66	8	규8762·(규8769·규8778)
1756년(영조32)	8권 7책	67	8	규8758·(규8768·규8779)
1757년(영조33)	8권 7책	69	8	규8761·(규8766·규8777)
1758년(영조34)	8권 7책	76	8	ਜੋ8760⋅(ਜੋ8770⋅ਜੋ8780)
1759년(영조35)	8권 7책	79	8	ਜ8740
1760년(영조36)	18권 8책	87	8	
1764년(영조40)	18권 8책	88	8	규8627·(규8688·규8721·규8759규87 67·규8772)
1771년(영조47)	18권 8책	91	9	
1772년 8월(영조48)	18권 8책	92	9	〒8689-1(落帙本)
1772년 11월(영조48)	18권 8책	93	10	규8729⋅(규8730・규8735)
1776년(영조52)	18권 8책	94	11	_

^{*} 위 표는 尹仁鉉, 1992 『璿源系譜紀略』의 板本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함.

<부록3> 1744년 10월 『선원보략』 「洗補記」

篇	丈	千字文	人名	洗補處	篇	丈	千字文	人名	洗補處
2	1	閨	永壽	毓祥宮印入		13	悲	崔弘簡	見都作邑
			男	毓祥宮印入		14	絲	張至中	見鬱作樓
	2	餘	延齡君	見志作滿		21	行	申景顔	見飛作驚
			申思冏	見滿作逐		28	德	趙德洙	見逐作物
	3	成	趙明斗	見逐作物		41	堂	金炯	見樓作觀
	4	歲	元景夏	見物作意		43	聽	韓弘朝	見飛作驚
			趙載浩	見夏作東		44	邤	柳懋	見驚作圖
	6	呂	具萬喜	見志作雅		45	因	安允澤	見圖作寫
	7	調	朴師洙	見雅作操		46	惡	安允定	見圖作寫
			李普昌	見操作好				趙懋	見寫作禽
	8	陽	許構	見操作好		48	福	李大信	見禽作獸
	9	雲	李剛中	見好作爵		50	善	李命岳	見獸作畫
3	1	(致)	趙東圭	見虧作自		51	慶	申慶洽	見獸作畫
	3	露	坱	見糜作都		58	是	成昌烈	見畫作綵
	4	結	崔守身	見都作邑		59	竞竞	柳祥來	見畫作綵
	7	金	李載稷	見邑作華	6	5	薄	任徵夏	見靈作丙
	8	生	沈溏	見華作夏				李重之	見舍作傍
	9	麗	李德重	見楹作肆		7	興	林象翼	見甲作帳
	11	玉	李恒培	見肆作筵		8	溫	金聖應	見帳作對
	17	號	李獻哲	見持作雅		9	凊	尹益東	見對作楹
	23	果	宋夏欽	見逐作物		13	警	李德重	見楹作對
	30	(薑)	趙載	見夏作東		15	松	李德彬	見肆作楹
			金時默	見帳作對		22	淵	朴師伯	見設作席
	41	(華)	李彦坤	見東作西				吳璿	見設作席
	49	文	安道明	見西作二		31	辭	李命福	見丙作舍
			安道彬	見西作二		33	定	尹東休	見瑟作吹
	53	衣	韓德獜	見字作背		36	誠	柳經漢	見吹作笙
	55	推	韓德載	見印作面		41	令	鄭運紀	見笙作陞
	62	唐	兪彦興	見洛作浮				黄撲	見笙作陞
			安廷盆	見洛作浮		54	攝	尹得敏	見陞作階

	66	(罪)	崔昌柱	見渭作據		57	政	李莘輔	見陞作階
	70	湯	金棶	見渭作據		63	īfīj	朴道元	見階作納
	71	坐	沈鏜	見據作涇		64	盆	洪棒	見階作納
	73	問	延齡君	見志作滿	7	10	婦	李存性	見納作階
4	6	育	李達孝	見鬱作樓				李邦賢	見納作階
	7	黎	權世億	見涇作宮		19	儀	柳燁	見階作弁
	8	首	金梃	見涇作宮		29	懷	朴乃覃	見弁作轉
	23	在	垍	見宮作殿		30	兄	全命周	見轉作疑
	25	白	沈黛	見據作涇		31	弟	南泰寅	見轉作疑
	26	駒	安錫九	見殿作盤		35	枝	李養吾	見疑作星
	27	食	李之馨	見殿作盤				李命吾	見疑作星
	39	身	金載中	見席作鼓		37	友	柳義養	見驚作圖
5	2	己	垍	見宮作殿		43	規	沈鑌	見堅作持
			徐進修	見盤作鬱		55	退	李匡尹	見鼓作瑟
	3	長	徐億修	見盤作鬱		58	匪	吳錫禧	見星作右
	12	墨	沈鑌	見堅作持		64	(心)	李之馨	見殿作盤

<Abstract>

Modification of Seonwon-gyebo-giryak and Printing on Wood Blocks in the Reign of King Yeongjo

Cho, Gye Young *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features of modifying Seonwon—gyebo—giryak and printing it on wood blocks in the reign of King Yeongjo. Since issued in 1679 (the fifth year of King Sukjong), Seonwon—boryak was modified as the rituals of royal family were held. This thesis paid attention to the foundation of Gyojeongcheong and the modification of related Jasonnok (子孫錄), out of the features of modifying Seonwon—gyebo—giryak during the period of King Yeongjo. The period of King Yeongjo's reign of 52 years had been in complex political situations from Eulsa hwanguk (1725) to Eulhae Oksa (1755), and in the course persons related to purges of rebels were removed from office and reinstated repeatedly. Modifications were done for the detailed notes of Jasonnok of Seonwon—boryak of King Yeongjo period which were related to the revel purge. In Seonwon—boryak in the reign of King Yeongjo, the detailed notes of Gwanjak (titular office and rank) were modified in Jasonnok related to the purges of rebels.

The wood block used for the modification of Seonwon-boryak was Jajakpan (自作板). Jongbusi requested Jajakpan required for the modification of 「Seonwon-boryak」 by issuing official document. As there was no tribute manager for Jajakpan, the lower officials of Gyoseogwan (office of government publication) acted for wholesale dealer, but it was difficult to secure sufficient quantity at once. Therefore Sebo (洗裙) was actively used for the modifications of Seonwon-boryak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Sebo refers to a supplementation by cutting misspellings from the finished books and correcting, and a cap holes (補孔) by cutting typographical errors from the book editions as well. In case of Seonwon-boryak, Sebo, not correcting misspellings,

^{*} HK Research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done to the old blocks or previous editions. Sebo was a printing method used for the modifications of Seonwon-boryak over 28 time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which was a effective way to save wood blocks and papers.

Key Words: "Seonwon-gyebo-giryak₁, Gyojeongcheong, modification, Jajakpan, Sebo, purge of rebels